

**공개방송에서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을
흥미본위로 지적하면 명예훼손**

- 일본 오사카지방법원 판결 -

마이니찌(毎日)방송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텔런트 야시키 다카지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텔런트 호리 지에미의 전 남편이 야시키와 마이니찌 방송에 도합 2,2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오사카(大阪)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2006년 12월 22일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을 흥미본위로 지적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판시, 피고 측에 도합 330만 엔의 지불을 명하고, 마이니찌 방송도 “편집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발언을 방송했다”고 지적,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것은, 2005년 10월 18일 심야에 방송된 공개녹화프로 「たかじん(다까진) ONEMAN」인데, 판결에 의하면, 야시키의 공개녹화에서 원고와 호리의 이혼에 관해 발언하면서 “헤어질 때는 대단했다. 최고재판소에까지 갔다”, “남자가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 실제의 이혼소송은 고등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되었다.

피고 측은 “보도 프로와 비교할 때 오락 프로에서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넓다”고 주장했으나, 판결은 “시청자들이 모든 것을 허위로 생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피고 측의 주장을 물리쳤다.

피고 측이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마이니찌 방송은 “공인(公人)·예능인이 아닌 사람의 명예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제작 때 각별히 배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문협회보』, 2007년 1월 16일자)

□

**일본신문협회「실명과 보도」발간 계기로
실명보도·익명보도 논란 더욱 가열될 듯**

일본신문협회 편집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실명과 보도」라는 책자를 발간, 2만 4,000부가 매진되고 올해 들어 다시 증쇄(增刷)했다고 한다.

이 「실명과 보도」는 근래 정부기관을 비롯, 각 방면으로 익명(匿名)발표의 움직임이 확산되는가 하면 특히 경찰에서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자와 피의자들에 대한 익명화가 현저히 강화되고 있는 배경 하에서 간행됨으로 해서 앞으로 일본 내에서의 실명보도·익명보도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자는 실명·익명의 기준만을 마련한 매뉴얼이 아니고 보도 기관의 사명을 설명하는데서 시작하여 실명 발표의 의의, 실명 보도의 의미 등을 새롭게 제시하는 등 언론 측의 실명 공개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익명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정부기관이나 경찰, 범죄피해자단체 등 관련기관·인사들 간에 실명과 익명의 한계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2005년 12월 각의(閣議)에서 결정된 ‘범죄피해자 등 기본계획’에는 “경찰에 의한 피해자의 실명 발표, 익명 발표에 관해서는 (중략) 개별 구체적으로 안전에 따라 적절히 발표내용이 되도록 배려한다”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대해 신문협회 등 보도단체들은 “경찰의 자의적인 운용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위협받는다”며 삭제를 주장해왔었다.

또한 규슈(九州)변호사 연합회가 후쿠오카현(福岡縣)내 언론 기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피해자는 중대사건을 제외하고 「거의 전부가 익명」이라고 했으며, 중대사건에서조차 「유족의 요망」 등을 이유로 익명으로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신문협회의 실명 발표 요구에 대해서도 경찰청의 和田昭夫 홍보실장은 “경찰은 수집·보유하는 정보를 공표함에 있어, 공표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공표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공익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판단·결정하고 있다. 발표와 관련하여 이러한 생각은 이전부터 일관되어 왔으며, 기본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신문협회보』, 2006년 12월 12일자, 2007년 1월 1일자) □

스냅 사진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며 저작권은 원판 소유자에게 있다

-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 -

자신이 촬영한 전 남편의 사진을 무단 게재한 서적에 의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미국에 살고 있는 여성이 출판사인 角川서점과 저자를 상대로 출판금지와 11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 제46부는 지난 2006년 12월 21일 “출판은 원고의 의사에 반해 사진의 무단복제물을 반포(頒布)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출판금지와 함께 45만 엔의 지불을 명했다.

문제가 된 것은, 미국 출신 저널리스트인 로버트 파이팅의 저서 ‘도쿄 아웃사이더즈 도쿄언더월드Ⅱ’인데, 전후 일본 사회의 이면을 그린 논픽

션 작품으로 2002년에 단행본, 2004년에 문고판으로 발행되었다.

판결에 의하면 이 서적은 원고 여성이 1970년에 촬영한 당시의 남편과 장남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전 남편을 「전 CIA」라고 소개했는데, 파이팅은 전 남편의 친구로부터 이 사진을 입수, 사용 허가를 받았다.

재판에서 피고 측은 ① 일반저작물과는 다른 스냅 사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를 엄밀히 조사하는 관행이 없으며, 그러한 조사는 일반적으로 곤란하다 ② 사진을 게재한 목적은 인물의 풍모를 독자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저작물로서의 감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사체의 구도나 셔터 찬스의 포착 방법 등으로 보아 사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전 남편의 친구가 사진을 갖고 있더라도 저작권은 사진의 네거티브(원판)를 소유한 원고 여성에게 있으며, 피고 측은 저작권 처리에 충분한 조치를 강구했다고 하기는 어렵고 사진 부분을 삭제하면 출판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신문협회보』, 2007년 1월 16일자) □

파파라치들, 유명 배우의 은밀한 사진 소유권 놓고 법정다툼

유명배우 올렌도 블롬과 시에나 밀러의 은밀한 장면을 담은 사진들로 인해 발생한 90,000파운드 규모의 법정다툼이 런던 파파라치들의 냉혹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사진기자인 사이먼 로이드는 그의 친구이자 동료 사진작가였던 찰리 파이크래프트를 상대로 손

해배상소송을 제기, 약 45,000파운드의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로이드는 그의 전(前) 동료가 해당 사진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몫을 가로채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파이크래프트는 로이드가 “나와 회사의 명예를 더럽히고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미 밝혀진 주장을 계속 제기했다”고 강력히 반발하는 등 양 측은 치열한 다툼을 벌여왔다.

사건의 발단은 두 사진기자가 함께 일했던 2005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7월 24일, 두 사람은 까르띠에 폴로 행사장에 갔고 파이크래프트는 밀러와 블룸의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같은 날 밤, 두 사람은 파이크래프트가 일하는 YD 이미지사 소속 직원인 가레스 존스의 집에 가서 사진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데일리 메일』지에 보냈다. 사진에는 ‘Charlie Pycraft & Simon Lloyd/ydimage.com’이라는 타이틀이 붙었고 『데일리 메일』지는 35,000파운드를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로이드는 모든 사진들에 대해 50대 50의 권리를 가지기로 이미 둘 사이에 사전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들은 이 일이 있고 얼마 후 갈라섰고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르게 됐다. 파이크래프트는 법정 진술을 통해 “공동 필자명으로 된 타이틀은 내가 잠든 사이에 로이드가 컴퓨터를 이용해 고친 것”이라고 주장했고 “YD Image사와 관련이 있다”고 밝힌 데스몬드 윌리엄스는 “로이드를 방문했을 때 로이드가 ‘파이크래프트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고 이를 녹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이드는 『프레스 가제트』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녹음자료가 위조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 사건에 대해 런던 센트럴 법원의 해리스 판사는 “사진들이 매우 비싼 가격으로 팔릴 수 있는

특종”임을 인정하고 “그러나 파이크래프트의 말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데일리 메일』지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과 YD Image사가 해당 사진으로 벌어들인 55,000파운드의 절반을 로이드에게 지불할 것”을 판결했다.

(Press Gazette 2006년 10월 20일자) □

전동차 내 광고문구, 명예훼손 인정

-일본 도쿄고등법원 판결-

2004년에 발생한 사장 감금사건을 둘러싼 『주간 신조』(週刊新潮)의 기사와 광고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마이니찌(毎日)신문사와 피해자인 齋藤明 전 대표이사 사장이 발행사인 신조사(新潮社) 등에 약 5,000만 엔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공판에서 도쿄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지난 2006년 10월 18일 청구를 기각한 1월 18일의 1심 도쿄지방법원 판결을 변경, 신문광고나 전동차 내의 광고 문구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여 齋藤 전 사장에게 100만 엔을 지불하도록 명했다.

문제가 된 것은 감금사건을 보도한 동 잡지 2004년 3월, 11월호의 기사와 그 광고인데, 기사나 제목의 위법성을 부정하면서 광고의 문구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판단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기사는 공익목적도 있고, 중요부분은 진실”, “제목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나 기사와 함께 읽으면 오해는 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제목을 사용한 광고에 대해서는 “기사를 읽지 않는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없으며, 광고로서의 과장도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보』, 2006년 11월 7일자) □

영국 언론들 「보도금지」 규정 파기 전 비틀스 부부 이혼소송 보도 파문

이혼소송의 상세한 보도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영국에서, 전 비틀스의 제임스 폴 메카트니 (James Paul McCartney)의 처 밀즈가 법정에 제출한 이혼서류의 상세한 내용이 각 언론에 보도되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06년 10월 19일자 『가디언 지』(온라인판)에 의하면, 서류는 밀즈 측이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일리 메일』지가 10월 18일자 1면에 게재한데 이어 BBC, ITV, 스카이의 각 텔레비전 방송국이 뒤따라서 보도했는데, 이들 보도 기관은 이혼 소송의 상세한 보도를 금지한 소송 절차법을 무시한 결과가 되었다. 동법은 이름, 주소, 직업, 법률상의 논점, 고발·항변·반론의 보도를 규제하고 있다.

문서는 익명으로 PA통신에 보내졌다. 그러나 PA통신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배포하지 않았다. 『데일리 메일』도 같은 날 밤 문서를 입수, 진실인지를 확인한 다음 법적인 조언을 받고 늦은 판(版)에 게재했다. 발행원이 같은 『이브닝 스탠더드』 지도 보도했다.

BBC의 텔레비전 뉴스 부문 책임자인 호릭스는 “많은 논의를 했으나 밀즈의 주장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적절한 보도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하고 있다. ITV의 뉴스관계자도 “책임과 절도를 가지고 취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를 보도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

해, 취급하기로 결정하기까지 활발한 논의가 있었음을 밝혔다.

메카트니 부부는 2006년 5월 별거를 발표했다. 폴, 밀즈 두 사람 모두 문서의 진위(眞僞)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밀즈 씨 측은 2006년 10월 24일 『데일리 메일』과 『이브닝 스탠더드』 두 신문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보』, 2006년 10월 31일자) □

진실성이 없고, 허용되는 추론의 범위 벗어나면 명예훼손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

『주간 문춘』(週刊文春)의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요미우리(讀賣) 신문 그룹 본사의 渡辺恒雄 대표이사 회장·주필이 발행사인 『문예춘추』 등에 1,000만 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를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 민사 제12부는 2006년 10월 31일 명예훼손을 인정, 『문예춘추』 측에 200만 엔의 지불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명했다.

문제가 된 것은 「渡辺恒雄 회장에게 ‘개인자산 267억 엔’을 긴급직격(直撃)!, 「나베즈네 ‘신문 주필의 10억 엔 부동산’의 수수께끼」 등의 제목으로 보도된 동지 2004년 11월 18일호, 동 25일호의 기사인데, 渡辺 회장에게 부정축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진실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허용되는 추론(推論)으로서의 범위를 일탈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문예춘추』 측은 11월 10일 항소했다.

(『신문협회보』, 2006년 11월 21일자) □